



경기미 구매차액 지원사업 시행지침

경 기 도
(농 식품유통과)

<주요 변경사항>

구분	현행(2025)	변경(2026)	변경사유
우선 지원대상 (5p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없음 ■ 없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'25년 7월 가평 등 호우피해 지역 쌀가공업체 우선지원 ■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자 우선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재해 피해지역 지원 ■ 식품명인 지원을 통한 전통식품 산업 활성화
지원단가(5p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지원단가 300원/kg (3년평균 경기미 도매가 - 3년 평균 정부양곡가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지원단가 320원/kg (5년평균 경기미 도매가 - 5년 평균 정부양곡가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3개년 평균은 단년도 가격 등락의 영향이 크므로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해 5개년 평균으로 확대함
사업계획 변경 (7p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계획 10%이내 변경 시 시장군수 변경 승인 후 道에 보고(10% 이상은 道승인 필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계획 30%이내 변경 시 시장군수 변경 승인 후 道에 보고(30% 이상은 道 승인 필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시군 자율성 확대
만족도 조사표 (9p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항목 ③, ④, ⑬, ⑭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항목 ① ~ ⑮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 성과의 면밀한 측정
평가기준(26p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없음 ■ [가점] 인증 또는 품평회 수상 경력(G마크, 술 품질인증, 수상내역, 품평회 등) ■ 없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[항목⑦] 식품위생법 등 법률 위반 여부 ■ [가점] 인증 또는 품평회 수상경력 (G마크, 전통식품 술 품질인증, 수상내역, 품평회 등) ■ [가점] 호우피해 지역 및 식품명인 가점 추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식품 안전성과 법령 준수 여부 반영 ■ [가점] 적용 범위 확대 ■ [가점] 사업자선정 관련 사업지침 내용과 평가기준을 일치시킴

2026년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 사업 시행지침

▶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입니다.

담당기관	담당과	담당자	전화번호
경기도	농식품유통과	팀 장 김상용 담당자 김민선	031-8008-4468 031-8008-4445

I. 사업개요

1. 목 적

- 경기미 사용 전통주, 쌀 가공식품(쌀국수, 쌀과자, 떡 등)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으로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
- 경기 전통주 등 쌀 가공식품 경쟁력 강화 도모 및 전통식품 산업 활성화

2. 근거법령

- 식품산업진흥법
-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
-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
- 경기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- 경기도 경기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- 경기도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

3.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(안)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25년	2026년	2027년	2028년	2029년
합 계	433	366	366	366	366
국 비	-	-	-	-	-
도 비	130	110	110	110	110
시 군 비	303	256	256	256	256
자 부 담	-	-	-	-	-

II. 2026년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 사업시행 주요내용

1. 사업대상자

-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6조의2(등록하여야 하는 영업)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식품제조·가공업 영업등록한 자
 -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제36조(업종별 시설기준)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자
- 「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의한 「주류 제조면허」를 받은 자
 -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6조의2(등록하여야 하는 영업)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식품제조·가공업 영업등록한 자
 - 「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(주류 제조시설의 기준)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자

2. 지원자격 및 요건

- 주류(전통주 포함) 또는 쌀가공식품을 제조하거나 제조하려는 도내 식품제조·가공업체[푸드테크 기술 접목 제품 생산 업체 우선지원 가능 / 지침 29페이지(푸드테크 10대분야) 참고]
 - 경기미를 이용하여 주류(전통주 포함)를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도내 주류(전통주 포함) 제조업체
 - 경기미(쌀가루 포함)를 이용하여 쌀 가공식품(쌀국수, 쌀과자, 쌀빵, 즉석죽, 떡 등)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도내 식품제조·가공업체

3. 지원대상

- 경기미를 주원료로 사용하여 제조·판매되는 주류(전통주 포함)
 - ‘주류’는 「주세법」 제5조(주류의 종류) 제1항에 따름(주정은 제외한다)
 - ‘전통주’는 「술 품질인증 대상품목(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-152호)」의 주류종류에 따름
- 경기미(쌀가루 포함)를 사용하여 제조·판매되는 쌀국수, 쌀과자, 쌀빵, 즉석죽, 떡 등 가공식품
 - ‘가공식품’은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(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-56호)」의 ‘제1. 총칙 3. 용어의 풀이 43)가공식품’을 적용함

《 우선지원 및 제외대상 》

<우선지원 대상>

- '25년 7월 가평 등 호우피해 지역 쌀가공업체
-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자
- 쌀을 이용한 새로운 제품(쌀 베이커리, 쌀식초, 쌀기름, 쌀맥주, 쌀위스키 등) 및 전통주(민속주, 지역특산주) 제조업체
- 푸드테크(Food-Tech)* 기술을 접목하여 전통주 또는 쌀가공식품을 제조하거나, 하려는 식품가공업체

* 식품(Food)과 기술(Tech)의 **합성어**로 식품 생산·유통·소비 전반에 인공지능(AI), 사물인터넷(IoT), 바이오기술(BT)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신산업(식물성 대체식품, 식품프린팅, 온라인 유통플랫폼, 무인 주문기, 배달서빙조리 로봇 등)

<지원제외 대상>

- ① 경기미가 아닌 쌀을 이용하여 제조·판매되는 주류
- ② 주정 및 전통주 제조 시 사용되는 국(입국, 누룩 등)의 원료 쌀
- ③ 정부양곡을 원료로 사용한 쇠미, 파쇄미의 경우

4. 지원내용 및 조건

가. 지원형태 : 보조

- 지원비율 : 도비 30%, 시군비 70%

나. 지원기준 및 범위

- 지원한도 : 한도없음
- 지원단가 : 320원/kg 정액 지원

- 산출내역 : 5년평균 경기미 도매가(2,989원/kg) - 5년평균 정부양곡가(2,671원/kg)

※ 업체의 구매량, 구매액은 증빙자료(거래명세표, 계산서 등) 확인

5. 사업자 선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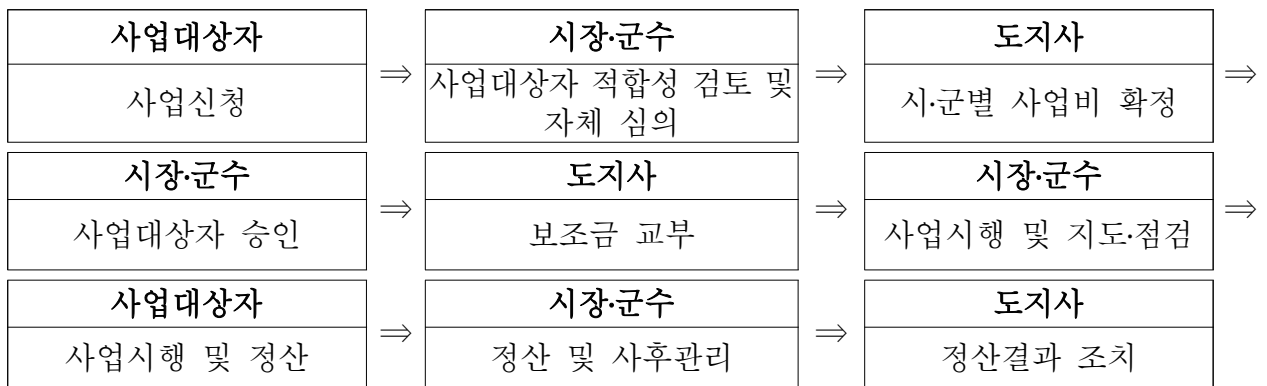
- 경기미를 이용하거나 이용계획이 있는 도내 주류(전통주 포함) 또는 쌀 가공식품 제조업체
 - '25년 7월 가평 등 호우피해 지역 쌀가공업체(우선지원)
 -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자(우선지원)
 - 쌀 베이커리 등, 전통주 제조업체(우선지원)
 - 푸드테크 기술을 접목하여 전통주 또는 쌀가공식품을 제조 또는 제조하려는 자(우선지원)

- 경기미 사용 실적이 많은 업체
- 제조업체-농가, 작목반, 영농조합 등 계약재배, 해당 시군 생산 쌀을 사용하는 업체
- 전통식품 품질인증 업체, 술 품질인증 업체, G마크 인증 등을 받은 업체
-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출품업체
- 쌀가공품 포장재에 원산지를 경기도 또는 시·군명으로 표시하는 업체

6. 사업기간 : 2026. 1 ~ 12월

7. 추진체계

- 사업시행주체 : 시장·군수
- 사업담당부서
 - 도 : 농식품유통과(식품산업팀)
 - 시·군 : 농정업무 담당부서
- 사업추진절차



※ 도지사는 시군별 사업비 확정 / 시군에서 사업대상자 승인

Ⅲ. 행정사항

1. 사업신청(변경) 및 선정 단계

도

- 기본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·군에 수요조사 시달
- 사업 시행지침 및 시군에서 제출된 사업 대상자 신청 내역 등을 토대로 시·군별 사업비 배정

시·군

- 시·군에서는 신청서 접수 후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대상자 적격여부, 사업계획서의 타당성, 우선지원 요건 등 검토·심의 후, 사업 대상자 신청 내역 道에 제출(별지 제3호 서식)
 - ※ 평가결과 총점 60점 미만의 경우 제외하되, 기선정업체의 결격사유 발생, 사업포기 등으로 사업비에 잔여분이 발생할 경우 道와 협의 후 추가 선정 가능
- 사업비 배정 받은 후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·승인하여 사업추진

사업자

- 전통주 또는 쌀가공식품 제조업체는 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를 시장·군수에 제출

2. 사업시행 단계

도

- 시·군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 교부 및 지도·점검

시·군

- 시장·군수는 확정된 사업비에 맞추어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제출한 실행계획서를 검토·승인 및 경기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(별지 제5호 서식)
-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시행요령 및 지원계획 등을 통지

<사업계획 변경 시 절차>

- 사업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사업주관기관(시·군)에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함
 - 기타 단순 착오 및 현지 사정으로 인한 운영상의 경미한 변경은 시장·군수 변경 승인 후 그 결과를 道에 제출
- 시장·군수는 계획변경 신청내용(사업비의 30%이내)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道에 제출
 - 단, 사업비의 30% 이상은 道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

사업자

- 최종 확정된 사업비에 맞추어 실행계획서를 다시 수립하여 제출
-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 추진

3. 자금배정 단계

도

- 도지사는 사업주관기관(시·군)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, 보조사업 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,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도에 반환하도록 할 수 있음

시·군

- 시장·군수는 보조금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
- 시장·군수는 현지 확인을 통해 사업별 추진 진도와 사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사업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
- 기타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지방재정법」, 「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함

4. 이행 점검·관리 단계

도

- 도지사는 사업착수 후 사업계획 이행실태, 추진상황 등 매 분기별로 시·군을 통해 실시하고 추진상 미비점 등을 보완조치 함

시·군

-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, **쌀 사용량 및 집행실적을 도에 보고하여야 함**(별지 제9호 서식)
 - ※ [제출일자] (1분기) 4월 10일 / (2분기) 7월 10일 / (3분기) 10월 10일 / (4분기) 12월 20일
- 시장·군수는 사업완료 후 연2회 이상 지도·점검하고 사후관리카드에 기록 유지·관리 (별지 제10호 서식)

- 시장·군수는 사업완료 즉시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, 만족도 조사 결과를 도에 제출

< 만족도 조사 항목 예시 >

구분	조사항목	조사내용	배점	평가점수					점수
				매우만족	만족	보통	불만	매우불만	
사업 안내·과정 충실성	① 사전 안내 적절성	• 사업 신청 전 충분한 안내·설명을 받았습니까?	7	7	6	4	2	1	
	② 절차의 명확성	• 사업 승인·변경·정산 절차가 명확했습니까?	7	7	6	4	2	1	
	③ 담당 공무원의 대응	• 담당자의 응대는 신속·친절·정확했습니까?	7	7	6	4	2	1	
사업추진 실효성 / 경제적 효과	④ 문제해결 실효성	• 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	7	7	6	4	2	1	
	⑤ 생산성 향상	• 경기미 차액 지원을 받은 후 생산 효율이 개선되었습니까?	7	7	6	4	2	1	
	⑥ 품질 향상	• 제품 품질·식미(맛) 상태가 향상되었습니까?	7	7	6	4	2	1	
	⑦ 비용 절감	• 경기미 구매 시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까?	7	7	6	4	2	1	
매출·거래·유통 개선 효과	⑧ 신규 판로 확보	• 경기미 사용 제품의 경쟁력 강화로 신규 거래·납품·유통 확대에 도움이 되었습니까?	7	7	6	4	2	1	
	⑨ 경기미 사용 확대	• 경기미 원료 사용 비율 증가에 도움이 되었습니까?	7	7	6	4	2	1	
	⑩ 브랜드 이미지 개선	• 경기미 사용 강조 등 기업 이미지·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되었습니까?	7	7	6	4	2	1	
행정절차 이행의 편의성	⑪ 보조금 집행	• 구매확인서, 세금계산서 등 집행 절차가 어렵지 않았습니까?	7	7	6	4	2	1	
	⑫ 정산의 난이도	• 정산 서류 제출 및 검증 절차가 합리적이었습니까?	7	7	6	4	2	1	
종합 만족도 및 사업 요구도	⑬ 전반적 만족도	•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사업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?	8	8	6	4	2	1	
	⑭ 재참여 의향	• 향후에도 다시 동 사업으로 지원받을 의향이 있으십니까?	8	8	6	4	2	1	
	⑮ 개선 의견 (직접기술)	• 사업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점이 무엇입니까?							
합 계				(100점 기준)					점

- 시장·군수는 사업자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, 보조금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변경, 양도·양수할 수 없도록 지도

5. 보고사항

- 시장·군수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2월 말까지 제출(별지 제5호 서식)
-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월별 또는 분기별 제출(별지 제6호 서식)
- 사업대상자는 마지막 보조금 교부신청 시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(별지 제7호 서식)
- 보조금 정산실적 보고는 사업시행 익년도 1.31.까지 제출(별지 제8호 서식)
- 분기별 사업 추진실적(4월·7월·10월 10일 / 12월 20일) 까지 제출(별지 제9호 서식)

경기미 구매차액 지원 사업 세부 사업계획서

업체명(단체) :

일반현황

○ 주류(전통주 포함) 제조업체

업체명	대표자	설립 (결성)일	주류제조 면허취득일	행정기관 추천여부	직원 (명)	사업장 규모(m ²)	사업장 소재지 (지번포함)

○ 쌀가공식품 제조업체

업체명	대표자	설립 (결성)일	연매출액 (백만원)	직 원 (명)	사업장 규모(m ²)	사업장 소재지 (지번포함)

○ 생산 및 수출 현황(품목별 작성)

품목명 (브랜드명)	주원료(톤)				생산량(톤)		수출실적(톤/\$)		
	계	경기미	국내산	수입산	'24년	'25년	'24년	'25년	수출국
합 계									

사업계획

○ 생산원료(경기미) 조달계획(품목별 작성)

제품명	생산원료 조달계획량(톤/년)					조 달 방 법	비고
	합계 (A)	국내산			수입산		
		소계	경기도 (B)	타지역			
계							

○ 사업내용 및 소요액(신청 사업비)

제품명	경기미 사용량 (kg)	경기미 원산지	경기미원료제 품생산량 (kg)	사 업 비(천원)			비 고
				계	도비 (30%)	시군비 (70%)	
합 계							

○ 세부 추진계획

(단위 : kg)

제품명	세부사업내용	1/4분기	2/4분기	3/4분기	4/4분기
계	경기미 사용량				
	경기미원료 제품 생산량				
	경기미 사용량				
	경기미원료 제품 생산량				
	경기미 사용량				
	경기미원료 제품 생산량				
	경기미 사용량				
	경기미원료 제품 생산량				
	경기미 사용량				
	경기미원료 제품 생산량				

○ 사업 기대효과 :

—

○ ○시장·군수 귀하

경기미 지속 사용 및 확대 협약서(신생업체만)

○ 업체명(개인·법인·조합명) :

○ 주 소 :

○ 대표자 :

○ 생년월일 :

상기 업체(개인·법인·조합 등)는 쌀을 이용한 전통주 또는 가공식품 제조 시 경기미 소비 활성화를 위한 협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계획 등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.

1.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전통주 또는 가공식품 제조 시 경기미를 지속 사용 및 확대할 것을 약속합니다.
2.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경기미를 활용한 전통주 또는 가공식품을 지속적으로 연구 및 개발하여, 전통주 및 쌀 가공품 품평회 출품등을 통한 경기미 가공식품 품질향상 및 산업진흥을 위해 이바지 할 것을 약속합니다.
3. 상기 사항의 이행의무가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조건에 포함되었음을 인지하였고,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회수 및 시정명령, 지원사업 중지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등에 제한될 수 있음을 수용하겠습니다.

년 월 일

신청자(법인명 또는 대표)

(직인)

○○시장·군수 귀하

【별지 제5호 서식 / 시·군→道】

경기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

1. 사업명 :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

2. 보조사업자

- 명칭 또는 성명 :

- 주소 :

3. 사업내용

- 기간 :

- 사업량 : 00개소 / 경기미 000,000kg 사용계획

4. 교부신청 금액 및 내역 : 금00,000,000원

(단위 : 천원)

예산액	기교부액	집행액	금회신청액	교부누계	교부잔액

5. 계좌정보 : 은행명 / 계좌번호

「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.

20 년 월 일

00시장·군수

경기도지사 귀하

경기미 구매차액 지원 사업 실적보고서

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
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 사업에 대한
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.

- 첨부 서류: 1.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
2.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
정하는 서류

년 월 일

제출자	기관·단체명	대표자	(서명 또는 인)
	지방보조사업자(개인)	성명	(서명 또는 인)

○ ○ 시장·군수 귀하

1. 사업개요

보조사업자	성명(개인) 또는 기관·단체명 (기관·단체의 경우 대표자명도 작성합니다.)		
사업명			
사업기간	. . . ~		
교부 결정일			
사업비	총 천원	도비	천원 (%)
		시군비	천원 (%)
사업목적	○ (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.) - -		
사업 추진방법	○ (사업목적) ○ (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)		
추진실적	○ (추진실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.)		
사업성과	○ (사업이 완료되면 국가, 기업, 시민사회,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.) ※ 해당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수치와 함께 작성합니다.		

2. 일정별 계획 대비 실적

※ 작성분량: 2쪽 이내로 작성

시기	사업계획	시기	추진 실적	사유
월 일		월 일		

※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각 내용을 가급적 계량화·도식화하여 작성합니다. 이 경우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 간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'사유' 란에 작성합니다.

3. 사업추진 성과 * 추진사업 모두 기재

- (예시) 경기미 소비 확대 및 매출액 증대
 - 판매량, 판매액 등

※ 사업의 홍보 실적, 투입 대비 산출 비교분석,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.

4. 자체평가 및 향후계획

- -

※ 사업추진 결과 잘된 점, 부족한 점, 문제점,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.

5. 보조사업에 관한 개선·건의사항

- -

※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 완료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.

210mm × 297mm[백상지(80g/㎡)]

경기미 구매차액 지원 사업 정산실적 보고서

1. 정산총괄표

(단위: 원)

구분	예산액 (교부조건)	%	집행액	%	집행잔액	이자 발생액	비고 (잔액사유)
계		100					
보조금	(도비)		(도비)		(도비)	총 이자발생액:	집행잔액 사유 상세하게 작성
	(시군비)		(시군비)		(시군비)	지방보조금 이 자발생액:	

2. 내역별·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

(단위: 원)

구분	비목	지출일	지출금액	지출내역	지출 번호	지급 방법
총계						
보 조 금	소계					직불카드
						계좌입금

※ 지출일란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결제일 또는 계좌입금 시 통장인출일을 작성합니다.
 ※ 집행내역에는 지방보조금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.

3.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

(단위: 원)

구분	사업명	예산비목	교부액	지출액	집행잔액	집행잔액 발생 사유
보조금						

※ 발생 사유란에는 사업계획의 변경, 사업의 취소,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, 이자 등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작성합니다.

(뒤쪽)

4.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

(단위: 원)

단위사업	당초 계획액(A)	실제 사용액(B)	증감(B-A)	집행률 (B/A*100)
계				

5. 비목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

(단위: 원)

세 부 내 용	예산비목	당초 예산	변경 예산	주요 변경 사유	비고

※ 변경예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변경 승인에 대한 공문 사본을 첨부합니다.

210mm × 297mm[백상지(80g/m²)]

【별지 제8호 서식 / 시·군→道】

경기미 구매차액 지원 사업 정산실적 보고

□ 사업정산결과

【시군명 : 】

(단위 : 원)

사업 자명	사업내역		예산액(A)			집행액(B)			집행잔액(A-B)			경기미 생산지 (시군명)	비고
	경기미 사용량 (kg)	경기미 원료제품 생산량 (kg)	계	도비	시군비	계	도비	시군비	계	도비	시군비		

○ 집행잔액 발생사유(업체별로 상세하게 작성)

-

□ 사업추진성과(업체별로 작성)

가. 지원사업 추진계획 대비 실적

구 분	추진 계획	추진 실적	비고
	0 - 경기미 0,000kg 소비 - 경기미 구입처, 계약재배처 등 표기	0 - 경기미 0,000kg 소비 - 경기미제품 생산량 000kg - 생산제품 판매처 등 표기	계획과 실적이 차이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

나. 업체 생산실적 * 업체 총 매출액 및 생산실적, 쌀 사용량 작성

업체명	매출액 (백만원)		제품 생산량 (단위 : 톤)		쌀 사용량(단위 : 톤)										비고
	2025년	2026년	2025년	2026년	2025년					2026년					
					총 사용량	경기미	국내산	나라미	수입산	총 사용량	경기미	국내산	나라미	수입산	

○ 생산실적 증감사유 (업체별로 상세하게 작성)

—

다. 성과분석 및 향후 기대효과

○ 성과분석

— (실적 및 성과)

— (잘된 점)

— (부족한 점)

* 지원사업에 대한 업체 실적 및 성과(파급효과 등), 잘된 점, 부족한 점 등을 포함하여 작성

○ 기대효과

—

라. 사업 만족도 및 문제점 등 개선사항

<업체 만족도 및 개선사항>

○

—

<시군 만족도 및 개선사항>

○

—

【별지 제9호 서식 / 시·군→道(엑셀파일로 작성 제출)】

경기미 구매차액 지원 사업 분기별 추진실적(0/4분기)

(시군명 : 000)

업체명	사업 추진실적			예산액(천원)			집행액(천원)			집행잔액			특이사항
	제품유형	경기미 사용량 (kg)	제품 생산량 (kg)	계	도비	시·군비	계	도비	시·군비	계	도비	시·군비	
-													
소계	2개소	2,000	2,400	2,000	600	1,400	1,000	300	700	1,000	300	700	이상없음
업체1	떡	1,000	1,200	1,000	300	700	500	150	350	500	150	350	이상없음
업체2	쌀 과자	1,000	1,200	1,000	300	700	500	150	350	500	150	350	이상없음

※ 엑셀파일로 작성 제출

경기미 구매차액 지원 사업 관리카드

지원년도 (완료일자)	○○년도 (년 월 일)	사업추진 담당공무원	직급 : 성명 :
소재지			
업체명			
대표자	주소		성명 (전화번호)
전담관리자	주소		성명 (전화번호)
지원내용			
사업비(천원)	합 계	도 비	시 군 비
【업체 전경 사진】		【제품 사진】	

【별지 제11호, 시·군→道】

2026년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 평가기준표

‘경기미 구매차액 지원사업’에 참여할 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함.

20 년 월 일

평가자	소속 :	성명 :	(서명, 인)
평가대상			

1. 항목별 평가 기준

평가항목	평가지표	수	우	미	양	가	평점	
계량 평가 (90점)	① 신청업체 연간(25)경기미 사용량(20점)	경기미 사용 100톤 이상(20점), 50톤 이상(16점), 30톤 이상(12점), 10톤 이상(8점), 10톤 미만(4점) ※ 산출증빙 불가시 최저점 부여	20	16	12	8	4	
	② 신청업체연간(25) 쌀 사용량대비 경기미비율(20점)	80% 이상(20점), 60% 이상(16점), 40% 이상(12점), 20% 이상(8점), 20% 미만(4점)	20	16	12	8	4	
	③ 업체 총매출액 증가율(10점)	10% 이상(10점), 7% 이상(8점), 3% 이상(6점), 1% 이상(4점), 1% 미만(2점) ※ 최근 2개년 실적 확인(매출실적이 없거나 산출증빙 불가시 최저점)	10	8	6	4	2	
	④ 경기미 제품의 다양성(10점)	80% 이상(10점), 60% 이상(8점), 40% 이상(6점), 20% 이상(4점), 20% 미만(2점) ※ 최근 매출실적이 있는 제품만 점수 부여	10	8	6	4	2	
	⑤ 생산제품 원료(경기미)원산지 표시(10점)	‘시·군’단위 표시(10점), ‘경기도’단위 표시(6점), 기타표시음(2점)	10	6	2	-	-	
	⑥ 과거 사업비 50% 이상 집행잔액 발생(10점)	신규 및 해당없음(10점), 1회(6점), 2회 이상(2점) ※최근 5년간	10	6	2	-	-	
	⑦ 식품위생법 등 법률 위반 여부(10점)	해당없음(10점), 1회 이상(0점) ※최근 5년간	10	-	-	-	-	
비계량 평가 (10점)	⑧ 사업내용 진취성 및 기대효과(10점)	위생환경, 쌀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 개발 및 사업 의지, 지역농산물 추가사용 계획, 계약재배 등	10	8	6	4	2	
[가점]	⑨ 인증 또는 품평회 수상경력(HACCP, G마크, 전통식품·술 등 품질인증, 품평회 등 수상내역 등)	4개 이상(5점), 2개 이상(3점), 1개(1점) ※최근3년 수상경력(국가 또는 지자체 공인 수상경력만 인정)	5	3	1	-	-	
	⑩ 사업 우선대상	- '25.7월 가평 등 호우피해 지역 쌀가공업체 - 대한민국식품명인 - 쌀을 이용한 새로운 제품(쌀빵, 쌀시럽, 쌀식초, 쌀기름, 쌀맥주, 쌀위스키 등)가공업체 및 전통주 제조업체 - 푸드테크 기술 접목 식품가공업체				5		
[감점]	⑪ 사업 포기이력	사업 포기 이력이 있는 사업대상자 ※최근 3년간				-10		
합 계 (110점 만점)					총 점		점	

* 동점일 경우 과거 보조사업 선정 이력이 적은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

2. 종합의견

20 년 월 일

작성자 : 소속 00시·군 0000과 직급 성명 (인)
 확인자 : 소속 00시·군 0000과 직급 성명 (인)

【별지 제11-1호, 평가요건】

평가항목	확인서류	인정요건	체 크
계량 평가	① - 경기미 구매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('25년도 실적)	- 판매처 발행 서류인 경우 직인 필수 및 입금내역 등 확인	
	② - 쌀(경기미 외), 경기미 구매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('25년도 실적)	- 판매처 발행 서류인 경우 직인 필수 및 입금내역 등 확인	
	③ - 재무제표(최근 2개년도)	- 최근 2개년도 총 매출액 증가율 확인 * 매출실적이 없거나 산출증빙 불가시 최저점 부여	
	④ - 식품·식품첨가물 생산실적보고서(최근 실적)	- 최근 생산실적보고서상 실제 판매 매출이 있는 제품만 인정(등록은 되어있으나 매출액이 없으면 불인정)	
	⑤ - 품목제조보고서, 품목 라벨지(최근 실적)	- 최근 품목제조보고서 및 라벨지에 쌀 원산지 시군, 경기도 단위 표시된 경우	
	⑥ - 정산결과 제출 공문 (최근 5년간 : '21년 ~ '25년)	- 예산액 대비 대비 집행실적 확인 (최초지원자는 해당없음으로 최고점 부여)	
	⑦ - 관련 법 담당부서에 위반여부 확인 (최근 5년간 : '21년 ~ '25년)	- 「식품위생법」,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또는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 위반 경우	
비 계량 평가	⑧ - 출장복명서 및 현장확인 사진 - 제품 카탈로그 - 지역 환원사업 및 농가와 계약재배 등	- 매년 신제품 개발 및 출시 현황 확인 - 제품의 다양성 및 지속적 홍보 여부 - 지역 환원사업 등 확인(농협과 계약재배는 미해당)	
가점	⑨ - G마크, HACCP, 전통식품·술 품질인증, 수상내역, 품평회 등 (국가 또는 지자체 공인 인증)	- 인증 개수 및 수상경력 횟수 확인	
	⑩ - 사업 우선대상자 가점	- '25.7월 호우피해지역 업체(사업장 위치 확인) - 식품명인지정서 확인 - 경기미를 이용한 쌀빵, 살시럽, 쌀식초, 쌀기름 등 제조업체(품목제조보고서 확인) - 전통주 제조업체(면허 확인) - 푸드테크 업체(29p. 푸드테크 10대 핵심분야 확인)	
감점	⑪ - 사업포기서 접수 공문 확인 (최근 3년간 : '23년 ~ '25년)	- 사업 포기 이력이 있는 사업대상자 감점처리	

【별지 제12호 서식】

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【별지 제1호서식】

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

1. 지방보조사업명

관리번호	□ - □ - □ - 20□□ - □□□□ (※ 사업형태-사업자 유형-보조형태-보조사업 최초시작연도-연번 순으로 작성합니다.)
------	---

지방보조사업명

* 사업형태(국가직접지원: N, 시·도비보조: C, 전액 자체보조: I), 사업자 유형(민간: P, 공공단체: O, 자치단체: L), 보조형태(운영비: 0, 사업비: B), 보조사업 최초연도(20□□), 연번(순서대로 부여합니다)

2. 지방보조사업자

성명/단체명	상호/대표자	사업자 등록번호	주소	전화번호

3. 사업 개요

사업기간	총사업비 (백만원)
사업목적	
주요내용	

4. 지방보조사업자가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보조사업 지원연도	계	국고보조금	시·도 보조금	시·군·구 보조금	자부담
계					

※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(2017년, 2018년, 2019년, 2020년, 2021년 등)로 작성합니다.
 ※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.

5.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(단위: 백만원)

보조사업 지원연도	보조단체명	주소	대표자	보조금	반환액		보조금 사용내역
					정산 반환액	취소 반환액	

※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(2017년, 2018년, 2019년, 2020년, 2021년 등)로 작성합니다.
 ※ 반환액은 「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액이 확정됨에 따른 정산 반환액과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됨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.

6. 성과평가 결과

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	사업계획단계 (15점)	관리 단계 (25점)	성과 단계 (60점)	성과평가 결과		
				평가연도	총점수	결정
					점	
					점	
					점	

※ 1. 성과평가 결과는 성과평가 대상인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.
 2.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평가기준을 반영합니다.
 3. 결정란에는 그 내용을 '계속지원 가능', '지원 축소', '지원 중단' 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.

210mm × 297mm[백상지(80g/m²)]

참고

푸드테크 10대 핵심분야 기술개발 방향

10대 핵심기술 분야	연구 방향
①세포배양식품 생산기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배양액 핵심 소재, 지지체 등 신소재 발굴 및 생산 효율화 기술개발 고급육 모사를 위한 구조화 등 배양육 품질(식감·풍미) 고도화 기술개발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대량 배양 공정기술 개발 등
②식물기반식품 제조기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분리단백, 구조화단백 등 식물성 대체식품 소재 기술개발 고품질 단백질 구조체 대량생산을 위한 스케일업 기술 및 설비 개발 대체 지방, 물성 구현 소재 등 고기능 신규 첨가원료 발굴
③간편식 제조기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K-Food 특성 연구 및 DB화 K-Food 간편식 생산 자동화, 포장 개선 등을 위한 기술개발
④식품프린팅 기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내 농산물의 식품프린팅 적성 등 특성 연구 및 DB화 물성제어 등 식품프린팅 가공기술 및 표준모델 개발 식품 잉크 소재 개발, 보존·유통 기술개발
⑤식품 스마트 제조기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식품제조업 분야 AI, 로봇 등 기반 협동기술* 개발 * 인간과 로봇이 같은 공간에서 협동 작업을 수행하는 기술, 센서를 탑재하여 사람과 물리적 상호작용이 가능 주요 품목 제조공정별 이물질 검출 등을 위한 푸드센서 기술개발
⑥식품 스마트 유통기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요 농산물 수확후 품질 판정 등 인공지능 모델 개발 IoT 기반 농산물 가공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및 고도화 기술
⑦식품 커스터마이징 기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식품 특성, 건강 상관성 등 기초 정보 DB화 개인별 질환, 유전정보 등에 기반한 식이설계 알고리즘 개발 질환별 관리식 적용을 위한 소재 발굴 및 생산기술 개발
⑧외식 푸드테크 기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로봇, 수요예측 AI 등 외식 매장관리 자동화 기술개발 메뉴별 영양성분 정보, 고객 평가 분석 등 소비자 맞춤형 데이터 이용 기술개발
⑨식품 업사이클링 기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농식품 부산물 성분 DB 구축 및 원료처리 공정 효율화 농식품 부산물 종류별 업사이클링 용도 다양화를 위한 연구개발
⑩친환경식품 포장기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경량화 등 플라스틱 절감 기술개발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활용성 제고를 위한 고차단성 유니소재 기술개발 PHA 등 생분해성 원료 기반 식품포장 소재 생산기술 개발